

제3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1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3.2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당사국 관세 양허표에 따른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3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2조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수입 당사국 영역 내에서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원산지 상품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형태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또는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제3.3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는 정보를 검토하고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

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 조항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그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 조항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제외하고

나.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다.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양자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6.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기간의 종료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7.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포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3.4조

잠정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분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공고를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의 공표일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날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4.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5. 적용 당사국은 제3.3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3.2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3.3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3.5조

보상

1. 적용 당사국은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의 개시로부터 30일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모든 보상은 제3.4조에 따른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 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5.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고 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에는 행사되지 않는다.

제3.6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 한쪽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그 자체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거나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한 수입을 배제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 따른 조치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3.7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국 간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 사안에 대한 다음의 관행을 준수한다.

가. 반덤핑협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교 기준과 관계없이, 반덤핑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반덤핑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그러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조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질의서에 대한 적시의 답변을 요청한다. 조사 당사국이 마감기한 전에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조사의 목적상 명확화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당사국은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관한 정보의 명확화를 요청한다. 이 절차는 조사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당사국의 법과 규정상의 마감기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양 당사국은 반덤핑 협정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3.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3.9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실행 가능한 경우 그러한 약속을 제안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발생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상계 관세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3.10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종료 후 조사

양 당사국은 재심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다른 쪽 당사국

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

제3.11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 증진
 - 나. 이 장의 이행 감독
 - 다. 무역구제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 증진
 - 라. 양 당사국에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 제공
 - 마. 양 당사국에 다음을 포함한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의 장 제공

- 1)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 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 2)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그리고

바.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한 협력

3.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